

##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in Deutschland)

윤 석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I. 서론
- II. 독일 장애인평등법의 지위와 체계
  - 1. 장애인평등법의 제정배경과 연혁
  - 2.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헌법적 투영
  - 3. 장애인평등법의 제정
- III. 장애인평등법의 주요내용
  - 1. 목적
  - 2. 장애인의 개념
  - 3.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보호
  - 4. 장애인의 참여권을 제약하는 장해물의 제거
  - 5. 장해물의 제거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목표협약
  - 6. 국가 공권력주체의 의무
  - 7. 권리구제제도
- IV. 결론

### I. 서론

평등은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보편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평등한 지위의 보장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기회의 평등·형식적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바, 평등조항 자체로는 실질적 평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 사회국가적 경제질서, 이를 반영한 구체화 입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장애인은 대표적인 소수약자로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각종의 사회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입법이 탄생되고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최근의 개별입법에

서는 장애인의 보호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 장애인이 국가의 자선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에서 지역사회의 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시민권 차원의 보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각국에서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에 내재된 시각들의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그 자체가 아닌 각종의 사회적 장벽들에서 장애의 기원을 찾고 있으며, 차별받는 소수집단으로서 억압받아왔던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논의는 분리에서 통합으로, 보호주의에서 근로의 증진으로, 그리고 복지에서 시민권으로 전환된 장애담론으로 이어졌고, 199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독일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2002년에 “장애인평등법”을 연방법 차원에서 제정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의 보호라는 관점에 머물던 기존의 복지관계법의 이념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로의 참여를 기본이념으로 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독일의 각주에서 제정된 장애인평등법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 연방 장애인평등법의 구체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 II. 독일 장애인평등법의 지위와 체계

### 1. 장애인평등법의 제정배경과 연혁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들이 제정·공포되었다. 특히 1961년 연방사회구제법(Bundessozialhilfegesetz), 1974년 중증장애인법(Schwerbehindertengesetz), 1981년 학교법(Schulgesetz), 2000년 중증장애인의 실업해소에 관한 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Arbeitslosigkeit Schwerbehinderter), 2001년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에 관한 법(Gesetz zur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등이 대표적인 법률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주로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시혜 또는 사회연대적 시혜를 수단으로 장애인을 빈곤,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 즉, 장애인은 더 이상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가진 동등한 권리의 소유자인 일반시민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이를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처럼 변화된 독일에서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곧 헌법과 개별법률의 차원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 2.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헌법적 투영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서는 “누구든지 장애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자의적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4년 10월 27일 독일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이 채택된 것으로써 이에 따라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한 차별금지를 기본법에서 표명하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장애는 단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상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규칙적인(regelwidrigen) 심신의 상태에 기인하는 장애로 이해되고 있다. 이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사회국가원칙에서 고려되고 있었으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것은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채택과 함께 이러한 그룹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고 국가권력은 이들에 대한 협의의 제한들을 정하게 되었다. 결국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원조 및 통합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 3. 장애인평등법의 제정

연방국가 원칙에 의거하고 있는 독일은 연방을 구성하는 16개의 주에서 선거에 의하여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동시에 주단위의 헌법을 제정하여 자치적인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국가적·정치구조적 성격은 장애인평등법의 제정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선 2002년 4월 27일에 연방차원의 장애인평등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어서 각각의 주 정부는 2002년 이래로 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체적으로 연방차원의 장애인평등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차원의 장애인평등법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주에서 이루어졌으며 2005년 Baden-Württemberg 주를 마지막으로 현재 독일의 모든 주에서 장애인평등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 Ⅲ. 장애인평등법의 주요내용

### 1. 목 적

장애인평등법은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제거 및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1조).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여 장애인이 주체적인 생활형성을 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을 국가에 대한 단순한 수혜자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구체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평등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기능, 정신능력 또는 정신건강이 6개월 이상 장기에 걸쳐 그 연령대의 일반인의 상태와 상이하고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참여가 어려운 자를 의미한다(제3조). 이는 독일사회법전에 명시된 장애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2001년 세계보건기구(WTO)가 발표한 국제장애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의 개념은 더 이상 의학적 결핍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참여의 저해라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 3.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보호

장애의 주체에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언하면, 여성장애인은 장애여부를 거론치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 즉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각종 성범죄의 객체성, 수태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거기에 더하여 여성장애인에게는 선천적·후천적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마저 추가되어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 제약 하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독일 장애인평등법에서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제거

함으로써 남성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2조).

## 4. 장애인의 참여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의 제거

장애인평등법에서는 장애인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리고 외부의 도움없이 건축 등의 시설물, 교통수단, 기능적 도구, 정보처리체계, 청각적 및 시각적 정보원, 의사소통수단 및 기타 그 이외의 생활시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 (1) 건설·교통시설영역에서의 장애물의 제거

국가는 신축건물, 대규모의 재건축 및 증축건물들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접근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민간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의 건축물에도 적용되는바, 동조 제1항에서는 “평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해결책으로 장애물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에서 직접 관리하는 법인을 포함하여 공법상 기관 및 재단은 이들 시설물에서 통상의 기술규정에 상응하여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도(公道), 광장과 길, 공공의 여객운수에 있어서 공적으로 수용된 교통시

설과 운송수단은 연방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수화 및 기타 의사소통수단에 대한 사용권보장

독일에서는 장애인평등법 제6조에 따라 독일의 수화(手話)가 독립된 언어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음성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수화(手話)는 독일어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농아·난청)과 언어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독일 수화(手話) 또는 음성언어를 동반한 수화(手話)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독일에서 수화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적절한 의사소통수단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음성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수화 또는 기타 적절한 의사소통수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과 관계에서 행정절차상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 그리고 공권력주체는 필요범위 내에서 수화자를 통한 번역이나 적절한 수단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제9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연방노동부와 사회보장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① 수화자의 공급에 대한 청구의 기회와 범위 또는 기타 적절한 의사소통수단, ② 수화자 공급의 종류와 방법 또는 기타 청각 혹은 언어장애인과 공권력 주체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원조, ③ 수화자 또는 기타 적절한 의사소통수단을 위

해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보수 또는 상환비용에 대한 원칙, ④ 기타 의사소통수단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 (3) 각종의 인쇄물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장애인평등법에서는 국가 공권력 주체가 문서 정보, 일반처분, 공법상 계약 및 인쇄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특별히 장애인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공법상 계약·인쇄물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상의 권리에 대하여 당해 시각장애인의 추가비용부담 없이 인지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 노동부와 사회보장청은 이러한 문서 등을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회·종류·방법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제10조).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 주체는 스스로 직접 관리하는 인터넷매체(홈페이지)와 이의 제공과 처리를 위해 제작되고 정보기술을 통하여 표현된 인터넷매체상의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 노동부와 사회보장청은 기술적·재정적·행정조직상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보장을 위한 조치는 국가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바, 연방 정부는 정보기술 수단으로 표현된 인터넷사이트 및 그래픽 프로그램의 직업적 제공자에게도 그들의 생산품에 대하여 상술한 기술적 기준을 구축하도록 할 수 있다(제11조).

## 5. 장애물의 제거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목표협약

일시적으로만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를 제외한 정관에 따라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와 연방차원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직업적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 등에서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저해가 되는 각종의 장애물의 제거를 위한 공동목표협약(Zielvereinbarung)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분야의 각종의 사업단체들은 공동목표협약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혹은 활동영역을 가져야 하며, 이들 단체는 공동목표협약을 위한 교섭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교섭의 개시를 요구하는 단체는 공동목표협약을 위한 연방차원의 등기부에 교섭파트너의 명칭과 교섭대상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방노동부 및 사회보장청은 공동목표협약이 변경 및 폐지될 때 까지 등기부를 관리한다(제5조 제5항). 그리고 연방노동부와 사회보장청은 이러한 공동목표협약등기신청서를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기를 경료한 단체들은 등기일로부터 4주 이내에 현 교섭파트너와의 성명서를 통하여 교섭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이때 단체들은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섭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비로소 단체교섭을 확정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이렇게 체결된 공동목표협약은 ① 협약파트너와 기타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 ② 확정된 최소요건의 실행시기 또는 일정, ③ 공동목표협약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의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제5조 제2항).

## 6. 국가 공권력주체의 의무

연방행정관청과 그 밖의 공공시설, 연방이 직접 관리하는 법인, 공법상 기관 및 재단은 각각의 업무영역에 있어서 장애인평등법에 정하고 있는 목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처분계획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의 장애인평등은 주 행정관청과 그 밖의 공공시설, 주가 직접 관리하는 법인, 연방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법상 기관 및 재단에도 적용된다. 특히 국가 공권력주체가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은 불이익처우의 폐지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리고 남녀평등권의 실질적 관철을 위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장애인평등법에서는 모든 국가 공권력 주체에게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때의 불이익처우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달리 취급되는 경우와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함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제7조 제2항).

## 7. 권리구제제도

### (1) 옴부즈맨제도

장애인평등법은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방차원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수임관청(Amt der oder des Beauftragen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즉 옴

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제14조). 이 규정에 의하면 첫째,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맨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둘째, 옴부즈맨은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옴부즈맨은 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연방참사원의 소집으로 만료된다. 이처럼 연방정부에 의하여 선임된 임기보장형의 옴부즈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동등한 생활조건을 가지도록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 및 남성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조건들이 고려되고, 성차별적인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옴부즈맨은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그 밖의 중요한 계획의 입안시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연방정부는 이에 구속된다. 아울러 연방정부관련 모든 관청과 부서는 옴부즈맨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하고 특히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맨은 이들에 대하여 서류열람권을 갖는다(제15조).

### (2)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장애인은 다음의 경우에 행정소송 또는 사회법원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공권력주체에 의하여 불이익처우를 받은 경우

- ② 건설 및 교통영역에서의 장애물에 의하여 사회참여권을 제한받은 경우
- ③ 수화 및 기타 의사소통수단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 ④ 각종의 정보·공법상 계약·인쇄물의 인지에 있어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⑤ 공권력주체가 운영하는 각종의 인터넷매체와 이의 제공 및 처리를 위해 제작된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 ⑥ 스스로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제한된 경우

다만, 장애인 스스로 권리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하에 연방노동부 및 사회보장청으로 부터 인정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련 단체가 소송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장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를 대리한다(제12조).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목표협약의 체결주체들은 장애인평등법상 각종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회법원법 규정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체소송권은 장애인과 관련있는 단체로 하여금 비록 당해 단체의 권리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라면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집단분쟁이나 집단피해구제를 위해 원고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제13조).

#### IV. 결론

2000년대 이래로 독일에서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대표적인 법률들이 존재한다. 먼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의 실업해소에 관한 법」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에 관한 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살펴본 「장애인평등법」이 있다. 장애인평등법은 독일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 본래 독일은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규정을 사회법전 제9권에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평등법은 사회법전과는 차별화된 특성 있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독일은 사회법전 제9권에서도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평등법에서는 다른 장애인집단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여성의 특수한 상황이 배려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평등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장애인평등법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생활시설로서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가 건축 및 교통시설영역, 수화 등의 의사소통수단 및 정보기술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는 장애인의 자의적 차별처우금지라는 기존의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의 장애물의 제거의 무까지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평등법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건축과 교통, 수화 등의 의사소통수단, 문서에 의한 결정, 처분, 계약, 서식, 인터넷매체 등을 통한 정보기술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저해하는 시설 및 설치물의 제거와 관련하여 장애인평등법에서는 장애인 단체 및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합의제도는 장애인의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의 장애물 제거를 함에 있어서 사회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장애인보호제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평등법은 권리구제제도의 측면에서도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① 장애인평등법에서는 별도의 차별시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조직적으로는 연방 보건 및 사회보장청의 업무범위에 속하지만 기능상 독립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② 장애인평등법에서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소송대리와 단체소송을 특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정신장애인 및 지적 장애인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장애인평등법에서의 권리구제제도의 구조는 옴부즈맨으로 하여금 정보제공·조사·조정역



할을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는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독일의 장애인평등법은 최근 변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장애인인권 강조 및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평등법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일상의 생활영역에서 소외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인권의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법률로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